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4. 16.(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일용 의원 외 10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한일용 의원 외 10명
- 제안일 : 2021. 4. 12.
- 회부일 : 2021. 4. 12. (의안번호 : 21 - 45)

2.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시설의 정의에 ‘학원’ 추가(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4.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교육시설의 정의에 ‘학원’ 을 추가로 규정하고
- (안 제5조제2항)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 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9조의2)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지난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

※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자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하였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씩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본 조례안 제2조의 교육시설 정의에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에 명시된 학원¹⁾을 추가로 규정하고, 어린이

1)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 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나 아이를 태우러 온 학부모와 학원 차량들이 수시로 학교 앞에 정차하여 아이들을 태우면서 등·하교 시간대의 도로는 학원 차와 승용차로 인한 2차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단속 강화와 교육을 통한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